

「2026년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ICT산업 신규과제 발굴 지원 사업 재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북 지역 ICT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과제 발굴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7. 29.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I 공고 개요

- 공 고 명 : ICT산업 신규과제 발굴 지원 사업 재공고
- 추진목적 : 국가 AX 정책 연계 및 도내 ICT·신산업 기획 지원을 통한
충북형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공고기간 : 공고일 ~ '26. 8. 20.(목)
- 지원내용

구 분	신규과제 발굴
지원분야	ICT 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 'II.세부 지원계획' 참조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준)	충북 도내 ICT/SW 관련 벤처·중소기업 또는 산·학·연 전문가 그룹
지원규모	최대 20,000천원(1개 과제) ※ 지원금은 평가 결과 및 지원 가능 예산 등 고려하여 최종 확정
지원내용	과제 기획에 필요한 비용 지원(인건비)
지원기간	약 3개월('26. 9. ~ 11.) 예정 ※ 협약 시기에 따라 실 수행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II 세부 지원계획

○ 지원분야 : ICT 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 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 목표 수준 제시

구 분	분 야	
ICT 산업 분야	① ICT/SW	② AI
	③ 차세대 AI 반도체 클라우드	④ 양자 컴퓨팅
	⑤ AR/VR/XR	⑥ 기타

○ 지원대상 : 기업 또는 산·학·연 전문가 그룹

구 분	기업	전문가 그룹
지원조건	- 충청북도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보유한 기업 [붙임 1]에 포함되는 ICT/SW 관련 벤처·중소기업	- 총괄책임자와 참여전문가로 5인 이내 구성 - 총괄책임자: 충청북도 소재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가
지원내용	과제 발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월별 임금 × 참여율 × 참여기간'으로 인건비 산정	[붙임 2] 2026년 학술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참고

○ 지원규모 : 1개 과제 /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지원

- 지원금은 협약 시 1차 지급(50%), 결과평가* 이후 2차 지급(50%) 추진

* 결과평가 시 70점 이상인 경우 2차 사업비 지급, 7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지원절차



III 선정평가

□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 과제 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 평가내용 :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 선정
 - (평가대상) 적정성/중복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진행 ※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예정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
- 평가기준
 - 전략, 경쟁력, 완성도 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발표평가 결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1건 선정
 -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타 사업에 참여 중인 과제와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경우 선정 대상과제에서 제외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과제 기획의 타당성 및 우수성 (30점)	○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및 사업의 필요성	10점
	○ 기획 과제의 기술적 차별성 및 독창성	10점
	○ 기획 과제의 세부 목표 및 추진 내용 등 구체성	10점
수행기관 역량 및 추진체계 (30점)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ICT/SW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15점
	○ 기획 지원금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참여인력 구성 적정성	15점
성과목표 및 파급효과 (40점)	○ 중앙부처/지자체 등 향후 국비 공모사업 연계의 구체성	10점
	○ 기획 결과물의 최종 완성도 및 활용 가능성	10점
	○ 고용 창출 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20점
합 계		100점

IV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 26. 8. 17.(월)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http://bizon.cbist.or.kr>)

※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제출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시스템 업로드 제출

○ 제출서류 ※ 기재된 순서대로 넘버링하여 zip파일로 제출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첨부1] ▶ 사업계획(신청)서 ※ 직인날인 / 본문 50P 이내 / 한글, PDF 파일 모두 제출 기업 및 전문가 그룹 양식 다르므로 작성 전 확인 必	각 1부	공통
2	[첨부2] ▶ 중복지원(신청) 제한 협약서 ※ 전문가그룹 제출 시 총괄책임자 대표 제출		공통
3	[첨부3]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과제 참여자 전원 제출		공통
4	▶ 사업자등록증 - 26년도 발급분		기업
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기업
6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¹⁾		기업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8	▶ 과제 참여자 이력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전문가 그룹
9	▶ 소속기관 참여 승인서 또는 겸직허가서 ※ 직인날인 / 자체 양식 활용		전문가 그룹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기업 신청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스템 업로드 후, 메일을 통하여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문 의 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산업부 디지털융합팀
강나영 주임

☎ 043-210-0836 / itsme@cbist.or.kr

1) 2024~2025년도 재무제표 제출

V 기타사항

- 신규과제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동으로 자유공모사업 지원
- 협약 종료 일주일 전까지 최종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성격, 규모 등을 검토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 본 사업은 인건비 전액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장비구입비·외주용역비 등 타 비목 집행 및 인건비 외 목적 사용은 불인정함
- 지원제외 대상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 또는 유사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
9. 신청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 위 기준 외에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8조(제재처분 및 사후관리) 등에 따라 국가/지자체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 선정 이후라도 위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가능

붙임 1

ICT/SW 산업 분류

대분류	업종코드	업종명
ICT제조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ICT 서비스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SW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 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인건비 등급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구분

※ 전체 참여 인원은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등급이어야 함